

-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·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2559호
----------	--------

2021. 2. 4.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21. 1. 21. 임정옥, 최재란 의원 외 6명
- 나. 회부일자 : 2021. 1. 22. 복지건설위원회
- 다. 상정일자 : 제28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
2021. 2. 4.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최재란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·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(안 제1조 ~ 안 제2조).
- 지원대상, 지원범위,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 ~ 안 제6조).
- 지원신청과 지원사항 기록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).

-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신훈)

-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아동·청소년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-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면,

-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(민법 제997조),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(민법 제1005조)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재산뿐만 아니라, 채무 또한 상속 됨.
- 또한 2020년도 3월 모 손해보험회사가 고객 사망으로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 상당의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등의 기사를 포함하여 아동·청소년을 상대로 상속 채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기사를 종종 접하곤 함.
- 본 조례안은 아동·청소년이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해야 함에도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피해를 보게 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에 채무 불이행자가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를 방지하고,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, 아동·청소년 기준을 「아동복지법」 18세 미만, 「청소년보호법」 만19세 미만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「청소년기본법」에

따라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 함.

- 안 제3조는 구청장은 상속채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·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.
-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의 범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속의 포기 및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 될 때까지로 규정 함.

※ 상속관련 법률행위

법률행위	법률효과	절차
단순승인 (제1019조 제1항)	피상속인의 자산과 부채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(상속의 기본형태)	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
상속포기 (제1019조 제1항)	상속의 효력을 소멸시켜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	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 (위 기간내 상속포기 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)
한정승인 (제1019조 제1항)	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	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 (위 기간내 한정승인 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)
특별한정승인 (제1019조 제3항)	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	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종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내

- 안 제6조에서는 변호사, 사회복지사 등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후 업무 협약 등의 조치가 필요 할 것이라 사료됨.
 -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아동·청소년이 지원 신청 하고, 부득이 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.
- 본 조례안은 현행법에서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

한정승인의 절차를 걸쳐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법률지원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성장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으로서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,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의원 8명, 출석의원 7명 만장일치 의결)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